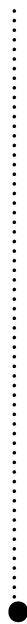



의정활동보고서



제321회 임시회(2021. 1. 26 ~ 2. 5)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제321회 임시회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작년에 이어 지금도 코로나 사태로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오직 경북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불편 등을 묵묵히 견뎌내시면서 방역수칙에 솔선수범해 주고 계신 자랑스러운 우리 도민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여러 위기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60명 의원님 모두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로 코로나 시국에 적극 대응하였고,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포항 지진피해 구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을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도민만을 바라보며 한마음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를 맞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위기 속에 있으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올 한 해 경상북도의회는 우직하게 일하는 소와 같이 경북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경북 산업의 고도화와 활발한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마다 활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경북, 살고 싶은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도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소와 같이 경상북도의회 60명
의원님 모두가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
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고 우 현

차 례

I. 개	황	9
II. 의사일정		11
III. 의안처리		18
IV. 민원처리		19
V. 본회의 보고사항		21
VI. 5분 자유발언		24
□ 박용선 의원(교육위원회)		24
□ 박정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27
□ 임무석 의원(농수산위원회)		30

부 록

☐ 조 례 안(6건)		35
☐ 동 의 안(3건)		57
☐ 결 의 안(1건)		65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321회 임시회는 2021년 1월 26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월 5일까지 11일간의 회기 동안 2차 본회의와 10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및 6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월 26일(화) 오후 13시 40분에 개의하여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휴회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금)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와 중국 Ningxia(寧夏)회 족자치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21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였다.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이번 제321회 임시회는 여전히 코로나의 위기 속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경북 산업의 고도화와 활발한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며 또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마다 활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경북,

살고 싶은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는 소중한 회기가 되었다.

다음 회기는 제322회 임시회로 2021년 3월 5일 오후 13시
40분에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21년 1월 26일(화)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21년 1월 26일 ~ 2월 5일(11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140회)

○ 위원회

(단위 : 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16	1	2	2	1	2	1	1	-	6
누 계	748	61	97	89	76	69	72	79	101	104

※ 누계는 제11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회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 26(화) 14:00 (제1차)	○ 5분 자유발언(박용선, 박정현, 임무석 의원) □ 안전처리 ○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의장제외)	
2. 5(금) 11:00 (제2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경상북도와 중국 닝샤(寧夏)회 족자치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2021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의 건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2. 5(금) 11:00 (제2차)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김대일) -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위원장(남용대) 인사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김준열) -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정세현) 인사 ○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 26(화) 13:00 (제1차)	☐ 안전처리 ○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기획경제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 27(수) 10:00 (제1차)	☐ 안전처리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투자유치실 소관)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대변인 소관)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청년정책관 소관)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대구경북연구원 소관)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1. 28(목) 10:00 (제2차)	☐ 안전처리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락산업국 소관) ○ 경상북도와 중국 닝샤(寧夏)회 족자치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관)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일자리경제실 소관)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재)경북테크노파크 소관)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학산업국 소관)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1. 27(수) 11:00 (제1차)	☐ 안전처리 ○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감사관 소관) ○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자치행정국 및 출연기관 소관) ○ 2021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28(목) 11:00 (제2차)	☐ 안전처리 ○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경북도립대학교 소관) ○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아이여성행복국 및 출연기관 소관) ○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복지건강국 및 출연기관 소관)	

〈문화환경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1. 27(수) 10:00 (제1차)	☐ 안전처리 ○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문화관광체육국 및 경북도서관 소관)	

〈농수산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1. 27(수) 10:30 (제1차)	☐ 안전처리 ○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재)독도재단 소관) ○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재)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 ○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1. 28(목) 10:30 (제2차)	☐ 안전처리 ○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1. 27(수) 10:00 (제1차)	☐ 안전처리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소방본부 소관)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교육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1. 27(수) 11:00 (제1차)	☐ 안전처리 ○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 ○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1. 26(화) 11:00 (제3차)	☐ 안전처리 ○ 주요업무보고의 건(동해안전락산업국 소관)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1. 26(화) 15:30 (제2차)	☐ 안전처리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소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1. 26(화) 15:30 (제2차)	☐ 안전처리 ○ 주요업무보고의 건(독도수호특별위원회 소관)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1. 26(화) 15:30 (제3차)	☐ 안전처리 ○ 주요업무보고의 건(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2.5(금) 11:30 (제1차)	☐ 안전처리 ○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남용대)인사 ○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정세현)인사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2. 5(금) 11:30 (제1차)	☐ 안전처리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김대일)인사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김준열)인사	

Ⅲ. 의안처리

구 분		접수 ㉠+㉢+㉣	처리 ㉠+㉢	의 결				철회 ㉢	계류 ㉣	비고	
				계 ㉠	가 결		부결				폐안
					원 안	수 정					
계		17 (717)	19 (699)	19 (696)	19 (651)	0 (45)	0 (0)	0 (0)	0 (3)	0 (18)	
조 례 안	소 계	4 (398)	6 (386)	6 (386)	6 (361)	0 (25)	0 (0)	0 (0)	0 (0)	0 (12)	
	의 원 발 의	4 (284)	6 (273)	6 (273)	6 (259)	(14)				(11)	
	도지사 제 출	0 (80)	0 (80)	0 (80)	(71)	(9)					
	교육감 제 출	0 (34)	0 (33)	0 (33)	(31)	(2)				(1)	
규 칙 안		0 (4)	0 (4)	0 (4)	(4)						
예산·결산		0 (31)	0 (31)	0 (31)	(16)	(15)					
동의·승인		3 (93)	3 (91)	3 (88)	3 (83)	(5)			(3)	(2)	
건 의 안		0 (3)	0 (3)	0 (3)	(3)						
결 의 안		3 (54)	3 (53)	3 (53)	3 (53)					(1)	
기 타 안		7 (133)	7 (131)	7 (131)	7 (131)					(2)	
청 원		0 (1)								(1)	

※ ()안은 제11대(제301회~제321회)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11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단위 : 건)

위원회	계	행정	사회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3 (56)	(12)	(2)	(2)	3 (13)	(5)	(1)	(13)	(2)	(6)
의 회 운 영										
기 경 제	1 (9)	(1)	(1)	(2)	1 (2)		(1)	(1)		(1)
행 정 보건복지	1 (11)	(8)			1 (1)					(2)
문 화 환 경	(13)		(1)					(11)		(1)
농수산	(8)	(3)			(1)				(2)	(2)
건 설 소 방	1 (11)				1 (9)	(1)		(1)		
교 육	(4)					(4)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단위 : 건)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1 (54)	1 (54)				2
의회운영						
기획경제	(8)	(8)				1
행정 보건복지	(10)	(10)				1
문화환경	(13)	(13)				
농 수 산	(8)	(8)				
건설소방	1 (11)	1 (11)				
교 육	(4)	(4)				
특별위원회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안건 접수 : 17건(조례안 4, 동의안 3, 결의안 3, 기타안 7)

2. 처리 의안 : 19건

○ 원안가결 : 19건(조례안 6, 동의안 3, 결의안 3, 기타안 7)

3. 의안접수 내용

○ 조 례 안 : 4건(원안가결 4)

연 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21.01.15.	김준열 의원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원안 가결
2	'21.01.15.	배한철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
3	'21.01.15.	박채아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21.01.15.	박용선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동 의 안 : 3건(원안가결 3)

연 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21.01.15.	도지사	경상북도와 중국 닝샤(寧夏)회 족자치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원안 가결
2	'21.01.15.	도지사	2021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1.01.15.	도지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 결 의 안 : 3건(원안가결 3)

연 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21.01.26.	위원장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 가결
2	'21.01.26.	위원장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21.02.05.	이춘우 의원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기 타 안 : 7건(원안가결 7)

연 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21.01.26.	의 장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 가결
2	'21.01.26.	의 장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1.01.26.	의 장	휴회의 건	"
4	'21.02.05.	의 장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21.02.05.	의 장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21.02.05.	의 장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
7	'21.02.05.	의 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

4. 조례 공포 사항 : 6건(도 3, 교육청 3)

연 번	공포번호	자치법규명	공포일	비고
1	제4467호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1.02.25	도
2	제4468호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	"
3	제4469호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	"	"
4	제4470호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	교육청
5	제4471호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6	제4472호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VI. 5분 자유발언

□ 2021년 1월 26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박용선 의원(교육위원회) ◎

《 독도침탈 등 역사왜곡 대응 관련 》

자랑스러운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고비를 지나면 우리의 미래는 훨씬 더 밝고 좋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소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역사 왜곡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과 일본, 중국의 우호 관계와 미래를 여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역사 왜곡을 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독도에 대한 침탈야욕을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지난 1월 18일 총리의 망언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언젠가 대마도 반환을 주장할 것에 대비한 책략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마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인정하는 역사 문헌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삼국지의 「위지왜인전(魏志倭人傳)」, 1832년 국제법상 공인 지도인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 1865년 미국 페리 제독의 일본 지도, 1924년 조선총독부 문서인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경북도는 주변국의 역사 왜곡과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침탈 책동에 대하여 수세적·방어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는데, 일본은 해외 수출기업까지도 독도침탈을 위한 성금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고 독도 망언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전범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고 투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을 포기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수 기업들조차도 독도사랑 후원이나 성금을 내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일본의 독도 망언이 있을 때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목소리를 높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아무런 반성조차 없는 전범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이고 일회적인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독도와 대마도를 분명한 한국 영토로 하기 위해 ‘대마도 실지회복 국민운동’의 불씨를 우리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되살려 내어야 합니다. 일본의 망국적 주장을 반박하는 체계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독도 교육뿐만 아니라 대마도에 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경상북도는 타 시·도와 공조하여 가칭 ‘영토수호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역사 왜곡에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전범기업을 모두 조사하여 공표하고 이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전범기업은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미쓰비시’, ‘도시바’ 등 많이 있지만,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하고 독도침탈 후원금을 내는 모든 일본기업들을 당연히 전범기업 범주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1948년과 1949년에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의 기상과 기개를 이어받아 조국 근대화의 중심인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시대적 소명을 다합시다.

침탈야욕과 역사 왜곡, 진실을 덮을 순 없습니다. 분명 독도는 대한민국 땅, 대마도는 한국 땅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21년 1월 26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박정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 남부내륙고속철도 가야산 통과 촉구 》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부내륙고속철도의 가야산국립공원 직선터널 통과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28일에 발표한 남부내륙고속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보고서 초안 공개를 통해서 고령역이 아닌 성주역 선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역사 유치는 고령군과 성주군 양 지자체가 선의의 경쟁으로 사활을 건 사안이었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고령역 유치를 위한 3만 2천 고령군민의 노력이 사실상 물거품 되어 본 의원도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고령역 유치 무산과 노선 변경 건은 고령군의 행정력 부재와 함께 경상북도청의 안이한 태도를 바탕으로 한 지역갈등 중재력 부재, 그리고 지역여론을 외면한 국토교통부의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 등이 종합적으로 점철되어 비롯된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주역 선정 문제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 또한 경제성과 이용객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고령군민의 의사와 역행하는 비합리적인 노선을 추진 중에 있어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남부내륙고속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당초 예비타당성 노선안인 가야산터널 대신에 가야산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수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야산국립공원 우회노선이 추진된다면 고령군 덕곡면 백리, 노리, 옥계리 등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고령 지역이 철도 노선에 잠식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가옥과 축사 등 생활터전 대부분이 상실되며, 여기에 소음과 공해 등이 더해져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무수한 대가야 역사·문화재도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야산국립공원은 훼손할 수 없는 성역이고 대가야 역사·문화재는 훼손해도 상관없는 하찮은 존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국토교통부의 가야산국립공원 우회노선 추진은 남부내륙고속철도 고령역 유치 실패로 인해 실의에 빠진 고령군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나 다름없습니다.

국립공원을 직선화 터널로 관통한 사례는 이미 존재합니다. 호남고속철도는 계룡산국립공원이 있는 북쪽 능선인 달갈봉을 통과해 운행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동해 북부선과 동서고속화철도 추진에 있어서 설악산국립공원을 터널로

통과하는 노선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환경 훼손을 이유로 가야산국립공원 우회노선을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입니다.

고령군은 당초 예비타당성 노선안대로 가야산국립공원을 터널로 직선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만약 국토교통부가 끝내 가야산국립공원 우회노선 추진을 강행할 시 투쟁을 불사하며 이를 강력 저지할 계획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최종 노선과 역사 위치가 5월에 확정될 예정인 만큼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합니다. 최악의 갈등 상황만은 막아야 합니다. 3만 2천 고령군민의 바람인 당초 예비타당성 노선안대로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국토교통부를 적극 중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 1월 26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임무석 의원(농수산위원회) ◎

《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

27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영주 출신 임무석 의원입니다.
도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
K-방역의 성공모델을 만들어주신 도민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주시는 새로운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는 첨단
베어링산업을 경북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였으며, 국내 최고의 베어링기업인 일진그룹과 관련 연
구소를 유치하면서 베어링 산업도시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2017년 7월 19일 대통령 100대 공약 국정과제에 선정되고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
발표하면서 영주시 적서동과 문수면 권선리 일원에 3,165억 원의

사업비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글로벌 소재 부품의 강국으로 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1만 1,000명 정도의 인구 증가, 연간 835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발생되어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경북 북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해 8월 21일에는 영주시의회가 1,850억 원 규모의 베어링 국가산단 재정지원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월 15일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주시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승인받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과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영주시의회의 사업실시협약 동의, 경상북도의회의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사업 동의안 의결, 경상북도와 영주시, 경상북도개발공사 간의 사업실시협약 체결,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계획안 수립 용역 시행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지사님, 금번 321회 임시회에서 동의안 의결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경북개발공사가 사업주체로 추진하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이 다음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경상북도, 경상북도개발공사, 영주시 간의 사업실시협약으로 진입도로, 용수 공급, 오폐수 처리, 향후 기업유치 노력과 산업

단지 조성과 지정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내용이 원만히 협의되고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2027년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만들어 내는 국가산단이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도지사님,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경북도, 경북도의회, 관련 단체의 긴밀한 상호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6건)		35
☐ 동	의	안(3건)		57
☐ 결	의	안(1건)		65

二 조 례 안 二

-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김준열 의원('21. 1. 15)
-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배한철 의원('21. 1. 15)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채아 의원('21. 1. 15)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용선 의원('21. 1. 15)
-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박채아 의원('20. 11. 23)
-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
김성진 의원('20. 11. 23)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2월 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 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전자투표 이용수수료 지원)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
지사”라 한다)는 입주자등이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하고자 전자투표를 이용할 경우 그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거나 주민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경과 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제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안의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공동주택 안의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 제6조(지원 절차)** ① 제5조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의로 선출된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시장·군수는 통보받은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자투표 이용수수료 지원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중전의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는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자	공 동 주 택 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 (또는 대표자) 성명			사용검사일	
신 청 내 용					
사업명	소요예산 (단위 : 원)			사업내용	비 고
	계	보조 금액 (신청액)	자체 부담액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 인 경우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제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2월 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역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이해교육”이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 등 지역사회의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교육을
말한다.
3. “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지역이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지역이해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이해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지역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지역이해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
4.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5. 그 밖에 지역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
2. 학생 동아리활동 활성화
3. 교사 연구회 활성화
4. 지역이해교육 관련 행사 개최
5.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 및 지원 확대
6. 그 밖에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협의회 설치)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이해교육 전문가, 관련 교과 교사 및 학자, 관련 학회 또는 지역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지역이해교육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운영 및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실정에 맞게 지역이해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지역이해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시·군, 문화원, 지역이해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지역이해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공동이용하고, 지역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2월 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경상북도 내 학생들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직영 또는 임차로 운영되는 통학버스 등의
차량을 말한다.
3.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통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이용 방안
4. 통학 및 통학차량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
5.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통학 지원 대상은 각급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통학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도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차량을 제공하거나 통학에 드는 교통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인근 학교와의 통학차량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통학 지원 대상 선정
2. 통학 지원 종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학차량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지원과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 공무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통학 지원을 신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안전대책 및 관리체계 등 통학 지원과 차량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

- 제11조(안전교육 실시)** ① 통학차량 운영 학교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 및 통학차량 운영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위하여 도 및 시·군,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통학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2월 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건강관리기본계획 시책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 교육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대해 교사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당은 「경상북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2월 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경상
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도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2월 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4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허가의 시기조정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二 동 의 안 二

- 경상북도와 중국 닝샤(寧夏)회족자치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도지사('21. 1. 15)
- 2021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지사('21. 1. 15)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도지사('21. 1. 15)

경상북도와 중국 닝샤(寧夏)회족자치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2월 5일

경상북도와 중국 닝샤(寧夏)회족자치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

☐ 자매결연 체결 지역

지 역 명	인구(만명)	면적(km ²)	비 고
중국 닝샤회족자치구	694.6	66,400km ²	

☐ 자매결연 체결 : 2021. 4월 중(예정)

☐ 자매결연(안)

대한민국 경상북도 - 중화인민공화국 닙샤회족자치구 간 자매결연 협정서(안)

대한민국 경상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닙샤회족자치구는 한중 양국의 공동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양 측의 우호협력을 공고히 하고 양국 국민들의 상호발전과 우의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매결연 협정에 대하여 합의했다.

1. 양 측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의거 경제무역, 문화, 보건 위생, 교육, 인재, 관광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2. 양 측은 고위급 인사 및 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 창구를 유지하고, 적시에 협력 사업과 관련한 소통과 논의를 한다. 또한, 양측의 유관기관이 협력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한다.
3. 본 협정은 한중 양국 언어로 각 2부씩 작성 후 양 측이 1부씩 보관하며, 모든 협정서는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4. 본 협정서의 유효기한은 5년이며, 기간 만료 후 어느 한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됨을 원칙으로 한다.

대 한 민 국
경 상 북 도 지 사

중 화 인 민 공 화 국
닝샤회족자치구 주석

2021년 월 일

2021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2월 5일

2021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 총괄표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건 수	수량(면적)	금 액	비 고
취 득	계	토지				
		건물	1	1,800	3,000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1	1,800	3,000	1동 신축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m², 백만원)

일련 번호	재산표시			기준 가격	취득시기 (계약방법)	취득 사유 및 소유지분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면적)				
1	토지						
	건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서부로 706	연면적 1,800	3,000	'22. 12. (공개입찰)	- 친환경 순환 여과양식 연구시설 건립 - 지분(도 100)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신축)
	기타						

※ (기준가격) 법제7조제7항에 의거 공시지가(토지), 공시된 주택가격(건물), 이외
시가표준액을 적용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2월 5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

□ 출자규모

구 분	계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민간사업자	비고
출자비율	100%	40%	60%	
출자금액	16,400백만원	6,560백만원	9,840백만원	

□ 출자시기 : 2021년 3월 예정(민간사업자 선정 후 SPC
설립 시)

□ 사업내용

1. 사 업 명 : 보문관광단지 상징형 쉼라인 조성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법인 설립일(2021년) ~ 청산일
- 위 치 :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일원(신평동)

- 사업규모
 - 코 스 : 보문호 수상공연장 일원 ~ 호반광장 일원
 - 주행거리 : 약 1,330m(짚라인 케이블 4개)
 - 짚라인타워 높이 : 123m(타워 건축연면적 : 1,016.23㎡)
- 사 업 비 : 금16,400백만원(공사 6,560 / 민간 9,840)
- 사업방식 :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민관합동 특수목적
법인(SPC) 방식

二 결 의 안 二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춘우 의원('21. 2. 5)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2021년 2월 5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출석요구 일시

- 2021. 3. 5.(금) 14:00(1차 본회의)
- 2021. 3.16.(화) 11:00(2차 본회의)

☐ 출석범위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

☐ 출석장소 :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

☐ 주요내용 :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도정질문 등 답변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2조, 「경상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